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577번
- 제 안 자 : 최유희 의원(찬성의원 17명)
- 제 안 일 : 2025년 3월 31일
-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왔으나, 현재 부모교육은 가족담당관 소관의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가족담당관에서는 이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며, 해당 조례 내에서 부모교육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부모학습 지원 조례」의 기능을 가족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불필요함.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 중복을 초래하며 실질적인 효용성이 부족하여 본 폐지조례안을 통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1월 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폐지의 대상인 조례, 이하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본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¹⁾을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음.
 - 구체적으로 기본원칙(제4조), 책무(제5조), 부모학습 내용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제6조, 제7조),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운영(제8조부터 제11조), 부모학습기관의 설립 및 위탁(제12조), 부모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본 조례는 2014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646호)로 제정·시행되어 1차례의 타법개정(2015.5.14.)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부모교육이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소관의 서울시 가족센터²⁾(이하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가족담당관 소관 조례, 이하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통해 부모교육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 중복 초래 및 실질적 효용성이 부족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음.

1) 본 조례 제2조(정의)는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건강가정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울시가족센터’를 출범(‘22.1월)함.

- 평생교육국은 본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에 동의하며, 조례 폐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원안 가결)을 개진하고 있음.

〈 폐지조례안 검토의견(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제출, 2025.4.4.) 〉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 현재 부모교육은 가족담당관 소관의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 해당 조례는 행정적 중복 조례와 실질적인 효용성 부족으로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시행되고 있는지, 조례에 규정된 책무, 협의회 구성, 기구 운영 등의 실적이 있는지, 타 사업과의 중복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졌는지 등을 포함한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5년 부모학습지원센터(민간위탁, '14.12월~'15.11월) 운영 이후 부모학습지원 관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조례상 종합계획(제7조 부모학습종합계획)과 협의회(제8조 부모학습협의회)가 미수립·미구성되었고, 2016년도 이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이 없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모학습 지원 사업 운영 〉

1. 추진개요 및 추진실적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추진사업 : 부모학습 지원 사업(민간위탁)
- 위탁기관 : 민간 전문기관 위탁 지정·운영

○ 교육대상 : 예비부모부터 성인자료 부모

○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생애주기별 건강한 부모역할 실현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지역사회와 다양한 부모학습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추진실적

- 부모교육 자문회의 구성·운영 : 3회('14.1.23, 2.5/13)
 - 서울시 부모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민간위탁) 방안 등 논의
-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부모학습 운영계획 수립('14.3~4월)
- 부모학습 모델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14.6~9월)
 - 지속 가능한 부모학습 시스템 및 부모학습 체계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 부모학습지원 사무운영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14.10.20~30)
 - ※ 1차 공개모집(2014.9.19.~10.10.) : 유효한 입찰자 2인 미만으로 유찰
- 위·수탁 협약체결 및 부모학습지원 사업 시행('14.12. 1)
 - 수탁기관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위탁기간(1년) : 2014.12.1.~2015.11.30.]
- 부모학습지원 활성화 워크숍 개최('14.12.23)
 - 참석 : 전문가, 수탁기관 운영진, 부모학습 강사 등 118명
- 프로그램 운영실적 ('15.9월 기준)

강의구분	프로그램(개)	강의횟수(회)	참석자 수(명)	교육기관 수
계	252	544	10,275	총 249개소
정규	68	340	1,963	홍제 3동 주민센터 외 67개소
정규(특강)	119	119	5,880	서울 가산초등학교 외 118개소
심화	65	85	2,432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외 62개소

2. 예산편성 · 집행 현황

□ 연도별 예산편성 · 집행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내용	집행률
2014	부모학습 지원센터 운영	500,000	119,470	민간위탁금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비 등)	23.9%
2015	부모학습 지원센터 운영	325,000	281,322	민간위탁금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비 등)	86.6%
※ '16년부터 예산 미편성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요약

○ 본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지원센터(민간위탁, '14.12월~'15.11월) 운영이 한 차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조례 제정(2014.1.9.) 이후 부모학습종합계획 수립·시행(제7조),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운영(제8조부터 제11조), 부모학습기관의 설립 및 위탁(제12조) 등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6년도 이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사유(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 조례 정비(폐지 또는 개정 등)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② 시장은 조례를 정비할 때에는 [별표]의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

정비유형	세 부항목	정비판단	정비 의견
4.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위반한 경우 - 조례의 정책적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 - 조례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 조례가 규정한 사항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 자치사무의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한 경우 -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정된 경우 - 사업종료/재단해산, 특별회계폐지/위원회 미구성 등 적용대상이 없는 경우 - 제정 후 장기간 도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 제정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적용대상이 없는 경우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경우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다만,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가족담당관 소관 가족센터의 부모교육 제공, 건강 가정 지원 조례 운영에 따른 행정적 중복, 효율성 부족 등)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 중복이 발생하는지, 본 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조례 폐지에 앞서 집행기관의 노력(업무 이관, 조례 개정 등)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현재 가족센터 부모교육은 ‘서울가족학교’ 운영 사업(별첨) 중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이 진행(아버지교실,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실) 되고 있으며, 건강가정 지원 조례의 목적(가정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주요 내용(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은 건강가정교육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평생 부모학습 제공)과 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본 조례 제정(2014.1.19.) 이후 단 한 차례의 민간위탁(부모학습지원 센터) 운영 외 실적이 전무하고, 2016년도 이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도 없었던바, 조례 미이행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입장을 확인한 이후 폐지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 평생교육국 자료[별첨, 평생교육담당관-469호(2016.1.13.)]에서 ‘부모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 종료를 통보하면서 종료사유(민간위탁기간 종료 및 향후 가족담당관 중심으로 부모교육 업무 추진)를 명시하고 있음.

- 참고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3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11.13.)에서 평생교육국은 ‘본 조례의 소관부서 변경(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협의’를 우선 검토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430호, 2025.1.13.)은 본 조례의 소관부서 이관에 대한 가족담당관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가족담당관에서 미동의(이관 거부, 검토의견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참고자료〉 부모학습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5.3월말 기준)

연번	조례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3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4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5	광주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6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7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8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9	전북특별자치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10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11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12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13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전, 울산, 강원, 충북 등 4곳 미제정

- 마지막으로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된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집행기관의 노력 없이, 관련 조례를 형해화* 한 이후 실적이 없어 관련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형해(形骸): 내용이 없는 뼈대라는 뜻으로, 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는 것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최 현 종
---------	-------	-----------	-------

별첨1.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자료(가족센터 부모교육 제공 관련)

서울가족학교 운영 현황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건강가정교육)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5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족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으로 서울시민의 가족 건강성 도모
- 사업대상 : 서울 생활권 가족 또는 예비부부
- 지원내용 :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3분야 5개 교실)
 - 부부교육 :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 부모교육 : 아버지교실,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실
 - 가족교육 :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패밀리 셰프’

① 예비부부교실	② 신혼부부교실	③ 아버지교실	④ 아동청소년부모	⑤ 패밀리셰프
 ·서로에 대한 이해 ↑ ·갈등대처방법 습득 ·건강한 의사소통	 ·관계, 결혼검진 ·자녀탄생 준비교육	 ·영유아발달 이해 ·자녀놀이학습지원 ·남성육아참여증진	 ·아동청소년발달 이해 ·사춘기 자녀 소통 ·부모성장 지원	 ·요리 매개 가족 상호 작용 교칭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교육

출처 : 가족담당관 제출자료(2025.4.8.)

전화 2133-3992 / 전송 2133-1013 / changino@seoul.go.kr / 대시민공개